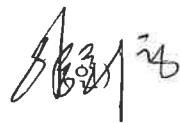


규정류(제정·개정)입안서

1. 규정류명 : 계약직 직원의 연봉제 직원 전환 임용 규정
2. 규정류(제정·개정)사유
가. 현행 규정 부칙 제1조의 적용범위가 2026년2월13일 임용자부터 시행으로 제한되어 있어, 규정 개정(2026.02.13.) 이전 임용되어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에게도 정규직 트랙 전환 요건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신설 : 규정 개정 전 임용된 재직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한 소급적용 및 경과조치 규정 명시
4.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 공포일로부터
5.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해당내용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내용 없음
다. 관련부서: 기획처
라. 신구조문 대비표

2026년 5월 19일

소관부서 : 총무처장 양희창



관련부서 : 기획처장 홍정화



신·구조문대비표

규정명 : 계약직 직원의 연봉제 직원 전환 임용 규정 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제1조~제5조(생략)</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13일 임용자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제5조(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본교에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제2조 제2항의 근무기간 및 근무실적 요건을 소급하여 적용한다.</p>	<p>기존 재직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한 소급 적용 근거 마련을 통한 우수한 행정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대학 경영 및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함</p>

계약직 직원의 연봉제 직원 전환 임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직 직원의 연봉제 직원 전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트랙전환) ① 총장은 학교의 재정 건전성, 대학발전 기여도, 직원근무업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직원(연봉제)으로의 전환 필요 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한다.

② 계약직 직원으로서 정규직 직원(연봉제) 전환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근무기간 요건 (개정 2026.2.13.)

가. 기술직:최초 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일반직:최초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근무실적 요건(트랙전환 임용일 기준으로 최근 직원근무업적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개정 2026.2.13.)

가. 기술직:최근 6개월 평가결과

나. 일반직:최근 1년 평가결과

3. 기타 교육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사람

제3조(트랙전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트랙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외결,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제4조(트랙전환임용 후 처우) ①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연봉제)으로 트랙전환을 한 경우, 현재 직급을 유지하며 정규직 직원(호봉제)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

② 정규직 직원(연봉제)으로서의 연봉은 계약으로 정한다.

③ 정규직 트랙전환 후 승진 임용 등은 직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5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직원인사 및 복무, 업적평가 관련 제규정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13일 임용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본교에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제2조 제2항의 근무기간 및 근무실적 요건을 소급하여 적용한다.